

시향월곶 가정통신

-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실 -

Ţ .	세 2019 - 121 호
담 당	신 아 영
자	070-7097-2517

2020학년도 초입 특수교육대상자 희망학생 진단평가 신청 안내 (홍보)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유아)에게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관내 초등학교 및 관외 특수학교 입학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희망하는 1)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및 2) 신규 특수교육 희망자(유예학생 포함)는 반드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오니다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5/17(금)까지 소속 유치원(어린이집) 또는 이메일로 2쪽의 진단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0학년도 초입을 앞둔 특수교육 희망학생 또는 장애학생이 누락되지 않고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웃에게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진단 · 평가 대상

1) 내년 초입을 앞둔 기존 유아특수교육대상자 2020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시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기존 유아특수교육대상자 중 <u>장애 4~6급 및</u> 복지카드 미소지 아동

※ 기존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 중 **복지카드 1~3급 소지 아동**은 현재 담임교사의 적응행동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로 진단 평가를 대체함

2) 내년 초입 시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희망자 (2019 유예학생 포함) 2020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시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복지카드 소지 아동 포함)

진단평가 운영 기간 및 시간

대상	진단평가일	진단평가 시간	진단평가 대상	비고
2020	2019. 6. 4.(화)	① 10:30~11:30	▶ 2020학년도 초입 시 기존	• 각각
초입	2019. 6. 11.(화)	② 11:30~12:30	(복지카드 미소지/장애 4~6급) 및	다른 날로
다 대상자	2019. 6. 18.(화)	③ 13:30~14:30	신규(복지카드 소지 아동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3순위까지
" 0 1		4 14:30~15:30	선정·배치희망 아동	작성하여
	2019. 6. 25.(화)	⑤ 15:30~16:30		신청

유의사항

- 1) 학부모 상담을 위하여 진단평가 시 학부모님이 동행해야 하는 것이 필수 사항입니다.
- 2) 2쪽의 점선 이래 부분을 작성하셔서 5/17(금)까지 소속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담임(특수)교사에게 제출 바랍니다.
- 3)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전자우편 신청 가능 : smilelovena@korea.kr
- 4) 1년 이내에 병원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사설 센터포함-임상심리사 평가 보고서) 등에서 진단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병원의 검사결과, 진단서 등이나 센터의 평가 보고서 등을 진단평가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니 담임교사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 교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5) 진단평가일은 학부모님과 유선통화로 조율한 후 최종 결정되며, 이후 학생의 소속기관에 통보·확인 합니다.
- 🖤 문의처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교사 🏗 070-7097-1696

2019년 5월 7일 시흥월 곶 초 등 학 교 장

2020학년도 초입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신청서

학생 인적사항 및 진학 희망교								
소속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교육 대상자 구분 (기존, 신규)	학생명	생년월일	장애등급 (복지카드)	진학 희망교	희망 특수교육 배치 형태 ①일반학급 배치 ②특수학급 배치 ③순회학급 배치		학부모 연락처
희망 진단평가 일자 및 시간 (1쪽의 표 참고하여 작성)								
1순위			2순위			3순위		
날짜	시간		날짜	,	시간	날짜		시간

2019년 월 일

보호자		(01
	-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시흥특수교육지원센터 위치 안내



은행지구 소래초등학교(시흥보건소 주변) 내 별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US

- 정왕동 방면 1번 버스 승차 후 삼미시장 정류소 에서 하차
- 31-7, 38, 31-9번, 61번 승차 후 시흥보건소 정 류소에서 하차

- ◎ 지하철(서해선)
- 신천역에서 하차 후 1번 또는 2번 출구 ▶도보 15분 또는 31-7, 38, 61번으로 환승 후 시흥 보건소 정류소에서 하차
- 시흥특수교육지원센터 :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27번길 14 소래초등학교 내 별관1층 (구. 시흥시 신천동 704-2번지) T) 070-7097-1690 ~8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제16조)♥

* 선정.배치 절차

1) 특 수 교 육 대 상 자 진 단 평 가 의 뢰 서 제출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 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 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 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야 한다.(법 제14조 제3항)						
	Φ						
2)접수 및 진단평가 회부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4항)						
	Û						
3)진단평가 시행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Û						
4)진단평가결과보고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2항)						
	Ω						
5)특수교육운영위원 회 심사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법 제15조 제2항)						
	ΰ						
6) 특 수 교 육 대 상 자 선정 · 배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6조 제3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법 제17조 제1항) 						